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4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복기왕·전용기·김우영
이상식·이재관·조계원
어기구·윤종균·이연희
허종식·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주거지역(「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도로에서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설비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3.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4.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태양광 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기준, 산정방법, 적용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태양광 설비의 주민 수용성 제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제12조”를 “제12조 또는 제27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3(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 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주거 지역(「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도로에서는 설정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설비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u> <u>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u> <u>3.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u>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u>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u>,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u>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4.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를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태양광 설비</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기준, 산정방법, 적용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정부는 태양광 설비의 주민수용성 제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 <u>제12조 또는 제27조의3</u>----- ----- ----- ----- ----- ----- ----- -----.
--	---